

【사례 2】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, 재건축조합 임원 등

-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
 - 법령에 따라 선출되어 겸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입후보 전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, 임기 시작 전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
-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
-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

【사례 3】 부동산 임대

-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·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
- 다만, 주택·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·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
 -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

【사례 4】 공무원 복무규정상 국가공무원들은 청원휴직 중 하나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육아휴직기간 중 생계유지를 위해 식당, 카페 등에서 소위 아르바이트 업무를 겸직해도 되는지?

- ▶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또한,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「공무원임용령」제57조의5에 따라 임용권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육아휴직 중 육아의 목적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휴직기간을 보내는 것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.

(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민원/정책 Q&A)